## 건축법



[시행 2024. 4. 17.] [법률 제20037호, 2024. 1. 16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건축정책과 - 건축제도 일반) 044-201-3762, 3763 국토교통부 (건축안전과 - 피난 • 마감재료 규정 운영) 044-201-4992 국토교통부 (건축안전과 - 건축구조 규정 운영) 044-201-4991 국토교통부 (녹색건축과 - 건축설비 • 조경 규정 운영) 044-201-4753 국토교통부 (건축정책과 - 건축감리 규정 운영) 044-201-4752 국토교통부 (건축정책과 -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) 044-201-3762, 3761 국토교통부 (건축정책과 - 건축물 용도) 044-201-3757, 3759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·구조·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·기능·환경 및 미관을 향상 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6. 9., 2011. 9. 16., 2012. 1. 17., 2013. 3. 23., 2014. 1. 14., 2014. 5. 28., 2014. 6. 3., 2016. 1. 19., 2016. 2. 3., 2017. 12. 26., 2020. 4. 7.>

- 1. "대지(垈地)"란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 필지(筆地)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다.
- 2. "건축물"이란 토지에 정착(定着)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 (高架)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・공연장・점포・차고・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건축물의 용도"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,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.
- 4. "건축설비"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・전화 설비,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,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, 가스・급수・배수(配水)・배수(排水)・환기・난방・냉방・소화(消火)・배연(排煙) 및 오물처리의 설비, 굴뚝, 승강기, 피뢰침, 국기 게양대, 공동시청 안테나, 유선방송 수신시설, 우편함, 저수조(貯水槽), 방범시설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.
- 5. "지하층"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.
- 6. "거실"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, 집무, 작업, 집회, 오락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
- 7. "주요구조부"란 내력벽(耐力壁)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 및 주계단(主階段)을 말한다. 다만, 사이 기둥, 최하층 바닥, 작은 보, 차양, 옥외 계단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.
- 8. "건축"이란 건축물을 신축・증축・개축・재축(再築)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
- 8의2. "결합건축"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,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.
- 9. "대수선"이란 건축물의 기둥, 보, 내력벽,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·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10. "리모델링"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11. "도로"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(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)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그 예정도로를 말한다.
 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도로법」, 「사도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

- 나.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
- 12. "건축주"란 건축물의 건축・대수선・용도변경,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(이하 "건축물의 건축등"이라 한다)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.
- 12의2. "제조업자"란 건축물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,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 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12의3. "유통업자"란 건축물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,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13. "설계자"란 자기의 책임(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,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.
- 14. "설계도서"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, 구조 계산서, 시방서(示方書)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.
- 15. "공사감리자"란 자기의 책임(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,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, 품질관리·공사관리·안전관리 등에 대하 여 지도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- 16. "공사시공자"란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.
- 16의2. "건축물의 유지・관리"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・구조・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17. "관계전문기술자"란 건축물의 구조·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.
- 18. "특별건축구역"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,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.
- 19. "고층건축물"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
- 20. "실내건축"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 거나 벽지, 천장재, 바닥재,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- 21. "부속구조물"이란 건축물의 안전·기능·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.
-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,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 7. 16., 2022. 11. 15.>
- 1. 단독주택
- 2. 공동주택
- 3. 제1종 근린생활시설
- 4. 제2종 근린생활시설
- 5. 문화 및 집회시설
- 6. 종교시설
- 7. 판매시설
- 8. 운수시설
- 9. 의료시설
- 10. 교육연구시설
- 11. 노유자(老幼者: 노인 및 어린이)시설
- 12. 수련시설
- 13. 운동시설

- 14. 업무시설
- 15. 숙박시설
- 16. 위락(慰樂)시설
- 17. 공장
- 18. 창고시설
- 19.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- 20. 자동차 관련 시설
- 21.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- 22. 자원순환 관련 시설
- 23. 교정(矯正)시설
- 24. 국방 군사시설
- 25. 방송통신시설
- 26. 발전시설
- 27. 묘지 관련 시설
- 28. 관광 휴게시설
- 2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**제3조(적용 제외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1. 19., 2019. 11. 26.>

- 1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
- 2.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(敷地)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
  - 가. 운전보안시설
  - 나.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
  - 다. 플랫폼
  - 라.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(給水)・급탄(給炭) 및 급유(給油) 시설
- 3.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
- 4.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)
- 5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
-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(이하 "지구단위계획구역"이라 한다)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(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)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,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1. 4. 14., 2014. 1. 14.>
- ③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·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1. 4. 14.>

**제3조(적용 제외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1. 19,, 2019. 11. 26,, 2023. 3. 21,, 2023. 8. 8,, 2024. 2. 6.>

- 1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, 임시지정명승, 임시지정시·도자연유 산, 임시자연유산자료
- 2.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(敷地)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
  - 가. 운전보안시설
  - 나.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다. 플랫폼

- 라.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(給水)・급탄(給炭) 및 급유(給油) 시설
- 3.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
- 4.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)
- 5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
- ②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(이하 "지구단위계획구역"이라 한다)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(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)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,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1. 4. 14., 2014. 1. 14.>
- 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·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1. 4. 14.> [시행일: 2024. 5. 17.] 제3조
- **제4조(건축위원회)**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심의·조정 또는 재정(이하 이 조에서 "심의등"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09. 4. 1., 2013. 3. 23., 2014. 5. 28.>
  - 1. 이 법과 조례의 제정 ㆍ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
  - 2.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. 다만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.
  - 3.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.
  - 4.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
  - 5.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09. 4. 1., 2013. 3. 23., 2014. 5. 28.>
  - 1. 건축분쟁전문위원회(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)
  - 2. 건축민원전문위원회(시・도 및 시・군・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)
  - 3. 건축계획 · 건축구조 ·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
  -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.<개정 2009. 4. 1., 2014. 5. 28.>
  -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.<개정 2009. 4. 1., 2014. 5. 28.>
  -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(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한다.<개정 2013. 3. 23.>
- 제4조의2(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(이하 "건축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. 17.>
  -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,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